

1. 의결주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범위 통합(광역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광역화(안 제30조의2)

- 1)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신설하여 해당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려는 경우 그 대상을 해당 이전지역 범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등으로 하게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 ⑤ (생략)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⑥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u>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u>
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제1호부터 <u>제3호</u> 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5. ----- <u>제4호</u>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4490